



육 군 본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이첩하달]특별재난지역(가평군 등 6개 지역)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하달

1. 관련근거

- 가.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(국방부 훈령 제3065호, '25. 7. 22.)
- 나. 수습관리과-1409('25. 7. 21.) 충남 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참여 협조 요청
- 다. 수습관리과-1410('25. 7. 21.) 광주·전남 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참여 협조 요청
- 라. 국.예비군훈련정책과-2059('25. 7. 23.) 특별재난지역(가평군 등 6개 지역)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하달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"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"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합니다.

가. 관련규정 :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(훈련 후 행정처리)
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(이월훈련 제외)을 이수처리한다.

- 나. 특별재난지역 : 가평군, 서산시, 예산군, 담양군, 합천군, 산청군
- 다.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: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'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(이월훈련 제외) 면제(이수처리)
 - 1)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,
 - 가) 해당 예비군 부대(동원훈련I형, 기본훈련, 작계훈련)나
 - 나) 해당 지방병무청(동원훈련I형)으로 제출하면 '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
 - 2)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"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"를 해당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
 - 3)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
- 라. 예비군이 관련 문의 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5항과 본 지침을 참고하여 안내하기 바랍니다.

붙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안내문(예문) 1부. 끝.

육군참모총장

수신자 지상작전사령관(예비군조직/훈련과장), 제2작전사령관(예비군훈련과장), 수도방위사령관(예비군과장), 수도군단장(예비군과장), 제1군단장(예비군과장), 제2군단장(예비군과장), 제3군단장(예비군과장), 제5군단장(예비군과장), 제7군단장(동원과장), 제17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31보병사단(동원참모), 제32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35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36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37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39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0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1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2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3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5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제56보병사단장(동원참모), 동원전력사령관(훈련과장), 인사사령관(총괄운영과장), 육군교육사령관(정보/작전과장), 특수전사령관(동원과장),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(교육훈련참모처장), 육군항공사령관(교육훈련과장), 육군사관학교장(계획운영처장), 육군3사관학교장(계획운영처장), 제2경비단장(작전과장), 육군군수사령관(동원과장), 지능정보기술단장(계획운영/품질과장)

중령 **최훈**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장 **노창석** 동원참모부장 **정학승** 전결 2025. 7. 24.

협조자

시행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-555 접수

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다-213호 / <http://hub.army.mil>

전화번호 군) 960-5541, 팩스번호 02-- 일)042-550-5541 / ktma3438@army.mil / 비공개(6)

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!